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29
----------	-------

발의연월일 : 2026. 1. 26.

발 의 자 : 안호영 · 김남근 · 박 정
진성준 · 임오경 · 이용우
김주영 · 김종민 · 이학영
윤준병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평가·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기관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74조 및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결과”를 “결과(이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개에”를 “공개·조정 등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홍보 등의 목적으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없으며, 최근 2년간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를 무효로 한다.

⑦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제4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74조제3항 전단 중 “결과”를 “결과(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개에”를 “공개·조정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을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으로 본다”를 “으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로 본다”로 한다.

제175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 자(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생 략)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 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u>결과</u> 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 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u>공</u> <u>개</u>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② ----- ----- ----- <u>결과</u> (이하 “안전·보건관리전문기 관 평가결과”라 한다)----- ----- ----- <u>공개·조정</u> <u>등에</u>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자에 대해서는 홍보 등의 목적으로 <u>안전·보건관리전문</u> <u>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없</u> <u>으며, 최근 2년간의 안전·보건</u> <u>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를 무효</u> <u>로 한다.</u>
<u><신 설></u>	⑦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이 제4항제4호 ·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안전·보</u>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결과(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라 한다)-----.

-----공개·조정 등에-----
-----.

④ -----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으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로 본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2.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u> <u>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u> <u>결과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u> <u>활용한 자(제74조에서 준용하</u> <u>는 경우를 포함한다)</u>
3. ~ 16. (생략) ⑥ · ⑦ (생략)	3. ~ 16.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